**목차**

**1. 총칙**

**2.안전보건관리체제**

**3.안전보건경영계획 및 평가**

**4.안전보건교육**

**5.안전관리**

**6.보건관리**

**7.재해조사 및 대책수립**

**8.상벌**

**9.보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전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전 사업장 임직원 및 동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거나 출입하는 자에 적용한다.

**제3조 제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안전보건관계 법규, 그룹 산업안전 기본지침 및 사내에서

운용되는 각종 절차 및 지침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규 및 회사규정에서 정한 용어를 준용한다.

1.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

조직의 전반적인 환경안전보건 성과와 관련하여 조직의 활동의지 및 원칙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의지이며,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는 체계를 제공한다.

2. 산업재해

고의성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물적 조건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한다.

3.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3.2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식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를 말한다.

5. 근로자

작업의 종류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작업원

회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와 일용원을 말한다.

7. 사업장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회사가 목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안전관리

사업장내에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각종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9. 보건관리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각종 조건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0.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단, 도급사업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제5조 책임과 의무**

1. 회사 내에서 안전보건업무의 총괄은 운영팀으로 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별도 조직을 운영한다.

2. 운영팀 및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인원, 시설물, 장비, 물자 및 작업환경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책임이 있으며, 관계법령과 본 규정, 사내 각종 절차 및 지침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계법령과 본 규정, 사내 각종 절차 및 지침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6조 재해예방조치의 우선**

1. 모든 사업과 관리에 있어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며,

안전보건관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제도 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운영팀이 재해예방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법령, 규정요지의 게시**

운영팀 및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이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과 본 규정, 사내 각종 절차 및 지침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

당사의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전 사원이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  |
| --- |
|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주)는 국내 최대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물류 선도기업으로서  환경·안전·보건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회사의 모든 활동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1. 환경·안전·보건 관련법규와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모든 경영활동에서 환경·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3. 전 임직원은 환경·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을 통하여 의식과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4. 녹색물류 실천으로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 하고, 대기·소음·폐기물 등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한다.  5. 사업장내 모든 유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020.08.20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주) |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9조 안전보건관리조직**

1. 대표이사는 본사 및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며,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갖는다.

2. 운영팀은 본사와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 및 안전보건관계자를 지도·조언한다.

3. 각 사업장은 사업장의 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라인조직을 둔다.

4.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안전보건활동을 실천한다.

5.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0조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

1. 본 사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대표이사

2. 각 사업장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 최고 책임자를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 산업보건의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써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예방의학과 전문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선임한다)

다. 안전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및 영별표 4에서 정하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 및 영별표 5에서 정하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마. 관리감독자 : 라인조직의 팀장 및 부서장 등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3.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법정 대행기관에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보건관계자의 변경 및 보고**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명장 등 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등을 새로 선임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이나 본 규정이 정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감독과 지시

2.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절차 및 지침 등의 제정 및 개정

3. 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관리

4.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

5. 산업재해 등 안전보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6.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등의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

7.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

8. 안전보건관련 투자 및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9.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관리 평가

10. 사업장 정기 및 임시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11. 안전보건관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2. 관련법령과 본 규정, 사내 각종 절차 및 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13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1.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련 표준, 수칙, 기준의 제·개정 및 이행여부 감독

3. 라인부서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4. 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대책의 수립, 기록유지 및 보고

5. 안전보건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6. 안전보건관계자의 지도 및 육성

7. 자체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의 수립과 실시

8. 설비의 점검 및 자체검사 주관

9.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10. 전사 안전보건관련 절차서, 지침서 및 시스템에 대한 실천 및 관리

11. 관련법령과 본 규정, 사내 각종 절차 및 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14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안전보건관련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이나 본 규정이 정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각 본부 내 산하조직별 안전지표 관리 및 평가

2. 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조직 별사고통계 유지관리 및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4. 사업장 현장에 대한 안전지도 및 점검 등 사고예방활동

5. 사고대응 및 사후처리에 관한 현장지원 활동

6. 안전보건관련 연간 투자 계획 및 예산 수립

7. 기타 운영팀과의 업무 공유를 통한 안전보건 활동의 실천

**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각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경우 구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5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 지침』**의 내용에 따라 운용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를 통해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가. 사내방송, 사내보 및 사내 인트라넷

나. 게시판 게시

다. 회사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라.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6조 전사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1. 전사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업무협의, 교육 및 정보공유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의 향상과 안전사고예방활동을 목적으로 구성 및 운용한다.

2. 전사 안전실무자 협의체에 해당되는 전사 RM협의체 외 전사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가. 주 기 : 월 1회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나. 대 상 : 전사 각 부문 내 본부/담당 별 유관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다. 내 용 : 안전환경관련 법규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전월 안전환경 주요이슈 및 향후

계획된 일정에 대한 공유, 각 사업장 별 안전환경실천활동 공유 등

**제17조 비상대응 조직**

1. 본사는 건물의 화재, 풍수해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대피유도자 등을 포함한 비상대응 조직을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각 사업장은 화재, 폭발, 풍수해 및 테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비상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비상대응 조직의 구성 및 운용은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절차서』**의 내용에 따른다.

**제 3 장 안전보건 경영계획 및 평가**

**제18조 안전보건 경영계획**

1. 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년간 안전보건 경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전사 안전보건관리 방침 및 목표 수립

나. 각 부문별 안전보건 경영계획 정량적 목표와 추진계획

다. 안전, 보건 관련 각종 재해 및 사고 예방·감소 대책 수립

라. 안전, 보건 및 소방시설 보완·개선 대책 수립

마. 안전보건관련 예산 책정 및 투자항목 검토

바.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계획

사. 기타 안전, 보건 및 소방활동의 세부추진계획 등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사 안전보건 경영계획에 포함된 경영목표 및 세부 항목에 대한

자체 안전보건 경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경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수립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가.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나. 경영검토 및 경영자 지시사항

다. 법규변화 및 대내·외 환경분석에 따른 사항

라. 전년도 안전보건 경영계획 미 달성 목표항목

라. 투자예산 반영된 항목 등

4. 안전보건 경영계획은 계획일정과 담당자지정 및 활동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보건 경영계획의 수립과 평가는 **『목표 및 세부목표 관리 절차서』**의 내용을 따른다.

**제19조 안전보건 경영계획 평가**

1. 운영팀은 회사 전체와 각 부문 별 산하 사업장의 계획된 안전보건 목표의 실적을 평가한다.

2. 안전보건 목표에 대한 평가는 각 본부 별 산하 사업장 별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며,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해 정량적인 방법으로 년 1회 12월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문 별, 사업장 별 안전보건실적에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해 안전보건 경영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제 4 장 안전보건 교육**

**제20조 안전보건교육**

1. 운영팀은 매년말까지 다음 연도 전사 안전보건 전문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각 부문 별 산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말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각 사업장 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정 직무교육을 고용노동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각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 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4.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정해진 교육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5. 신규 취업한 근로자와 작업내용 변경된 근로자,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반드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관계자는 교육계획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교육참석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대한 사내·외 교육대상 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그 실시결과에 대한

관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제 5 장 안전관리**

**제21조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장치는 성능검사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는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전 근로자는 임의로 안전조치의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사고가 있었던

기계·기구를 재 가동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검사**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호구**

1. 사업장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된 보호구에 대하여 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 및 착용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모든 근로자는 작업 시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보호구 미착용 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안전보호구의 경우 국가 공인기관 및 관련 법규에 의해 검정된 안전보호구만을 검토, 선정하여야

하며 지급된 보호구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작업 표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모든 작업과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근로자는 게시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작업은 작업 전 안전조치 후 정해진 안전작업 표준에 따라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

중량물취급, 각종기계·기구, 하역작업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각 사업장은 기계 및 설비의 신규 도입되는 경우, 작업환경 및 시설의 변경 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안전작업 표준을 신규 작성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5. 관리감독자는 안전작업 표준과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및

협력업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 작성 또는 보완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현장 점검 시 작업표준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관계 법규 및 사내 각종 절차 및 지침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는 취업 제한에 관한

기준이나 회사가 정한 자격·면허 및 경력 등의 취업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8. 기타 안전한 작업을 위한 활동은 **『안전작업 허가관리 지침서』**의 내용에 따른다.

**제25조 안전점검 및 순찰**

1. 전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관리감독자는 주 1회 이상 및 안전관리자는 일 1회 이상

각각 안전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점검 및 순찰결과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불안전한 행동을 발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4.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라인조직을 통하여 시정조치 사항, 개선요구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5. 점검 및 순찰 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점검표를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가. 안전보건 관련 설비의 정상 가동여부 및 이행상태 확인

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환경

다. 안전보호구의 정상적인 착용 여부

라.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마. 화재예방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바. 기타 사업장 별 업무특성에 따른 중점 관리항목

6. 안전보건관계자가 사업장을 점검, 순찰 또는 감독 시는 근로자에게 식별이 가능한 표식을

(안전모,완장,복장 등) 하여야 한다.

**제26조 안전·보건표지**

1. 사업장 내 유해·위험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 및 부착장소는 사업장 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해야 한다.

**제27조 위험성평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 활동에 잠재된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성의 제거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적 위험성평가의 계획은 운영팀에서 수립하여 각 사업장으로 통보하고, 사업장에서는

정기평가 외 현장 및 작업의 유해·위험성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은 **『위험성평가 절차서』**의 내용을 따른다.

**제28조 사전 안전성평가**

1. 사업장에서는 근원적인 안전성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운영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축물 : 신축, 증축, 개·보수, 임차

나. 시설 및 설비 : 신설, 증설, 구입, 변경, 임대

다. 안전보건환경 관련 장비 및 기타 부속자재 : 구입, 설치

2. 운영팀은 상기 항목과 관련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전 안전성평가를 통해 관련법규

및 사내에서 운용되는 각종 절차 및 지침의 내용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전 안전성평가 대상항목 중 **그룹 산업안전 기본지침** 제23조 1항의 별첨 6 사전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승인의 주체가 그룹 안전경영조직이 될 수 있다.

4. 사전 안전성평가 항목,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성평가 지침』**의 내용을 따른다.

**제 6 장 보건관리**

**제29조 근로자 건강진단**

1. 전 근로자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 신규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작업원인 경우 필요 시 소속조합에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근로자 건강진단 시 일반적인 검사항목 이외에 필요 시 건강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능직 및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취급부서 근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음, 분진 및 유해 위험물

취급부서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건강진단결과 유해화합물, 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 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로 인하여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 및 감염병,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등 질병에 이환된 사람으로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대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단, 규정에 의거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6. 택배영업직, 정비사, 검수직 등은 본 규정 이 외에 요추부위에 대한 X선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한 대상, 진단종류, 검사항목 및 유소견자 이력관리 등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실시 지침서』**의 내용을 따른다.

**제30조 작업환경측정**

1. 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인 경우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 지급하고

유해인자를 대체, 격리, 환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 및 측정결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나.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다.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라. 기타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4.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한 대상, 측정방법, 측정항목 및 측정결과에 대한 결과의 이력관리 등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관리 지침서』**의 내용을 따른다.

**제3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여야 할 대상, 작성 및 게시 항목, 경고표지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MSDS 관리 지침서』**의 내용을 따른다.

**제32조 보건기준**

1.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나.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다. 회사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지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라.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등에 의한 건강장해

마.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바.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건강장해

2. 회사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 7 장 재해조사 및 대책수립**

**제33조 긴급조치 및 비상대응**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며, 현장 보존 등 재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 목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대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안전보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중대산업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4조 처리절차**

1.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게 보고 및 연락

하여야 한다.

3. 재해발생 시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제35조 재해보고**

1.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사업장 내 재해발생 시 재해 등급과 내용에 따라 1차 선보고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보고를 하여야 한다.

2. 보고방법은 Risk 및 클레임 관리시스템 등록을 통한 e-mail보고, SMS 및 유무선연락 등을

활용한다.

3. 재해등급, 보고대상, 체계 및 대응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규에 의해 정해진** 내용에 따른다.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 : 30일 이내, 중대재해 : 지체없이)

**제36조 재해조사 및 대책수립**

1. 재해발생 시 재해발생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조사 및 재발방재대책 수립을 위해

현장보존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고조사 및 사고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촬영, 목격자 확보 등을 실시한다.

2.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장소에 출동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장에서는 재해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중대재해 발생 시 운영팀은 필요 시 재해발생 장소에 출장조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 종합재해분석 및 대책**

1. 운영팀은 매 분기 및 연간 재해현황에 대해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

개선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사고발생 시 산업재해를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심의 · 의결을 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은 재해발생 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조 및 체계적인 조사·분석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및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재발방지대책의 추진으로 동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상 벌**

**제38조 포상**

1. 운영팀은 매 반기 별로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운영팀은 안전관리에 공적이 있는 조직 및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 포상을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

1. 중대재해 발생 等 회사경영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안전보건관계자 및 사고관련자의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40조 무재해 운동**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 조직 또는 단위사업장별로 무재해 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무재해 운동 실시단위 사업장에는 무재해 기록판을 사업장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고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 보건관리자 겸임**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를 겸임한다.

**제42조 삭제**

**제 44조 서류의 보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각 호의 서류를 아래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가. 3년간 보존 (개정전 10년)

1) 산업재해 및 산재보상에 관한 기본통계

2) 사망 등 중대재해 관련 서류

3)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단, 작업환경측정 – 5년, 발암성 물질의 경우 – 30년 보관)

4)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5) 산업재해 관리대장

6) 산재보험급여 관리대장

7) 안전검사에 관한 서류

8) 안전관계자 선임에 관한 서류

9) 안전점검 순찰일지

10) 안전교육일지

11) 안전보건 업무일지

12) 위험성평가 자료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14) 일반산재 및 안전보건 관련 서류 등

**(가목 기존 10년 -> 3년 변경, 7,8,12,13항 추가)**

**부 칙**

이 요령은 1995. 07.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요령은 2000. 01. 25 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요령은 2006. 07.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요령은 2008. 05.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요령은 2009. 09.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요령은 2010. 02.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요령은 2011. 04. 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 06. 15 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 07. 06 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 08. 10 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제1호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표 제2호 】 안전교육일지

**[ 별표 제1호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전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

운영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지도 및 조언

지도 및 조언

근 로 자

LINE

■ 사업장 내 각 팀 및 부서별 단위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활용한다.

■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안전·인프라담당이 실시한다.

**[ 별표 제2호 ] 안전교육일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교육일지** | | | | | 담 당 | 팀 장 | 부 장 | | 점소장 |
|  |  |  | |  |
| 20 년 월 일 ( 요일) | | | | | | | | | |
| 소 속 |  | | | | | | | | |
| 교육구분  및  대상직종 | ( ) 근로자 정기교육  ( ) 신규채용 교육  ( ) 작업내용변경 교육  ( ) 특별 안전교육  ( ) 관리감독자 교육 | | | | ◇ 임직원 : 관리직 ( ) 택배직 ( )  운전직 ( ) 정비사 ( )  선 원 ( ) 기 타 ( )  ◇ 협력업체 : 상 용 ( ) 일 용 ( ) | | | | |
| 교육인원 | 구 분 | 임직원 | 협력업체 | 계 | 교육 미 실시 사유 | | | | |
| 대상인원 |  |  |  |  | | | | |
| 참석인원 |  |  |  |
| 불참인원 |  |  |  |
| 교육내용 | 제 목 | 교육방법 | | 교육내용 (개요) | | | 교육시간 | 교 재 | |
|  |  | |  | | |  | |  |
| 교육강사  및  실시장소 | 강사성명 | | 소속 및 지위 | | | 교육장소 | | | |
|  | |  | | |  | | | |

∴ 뒷면에는 교육실시 장면 사진(날짜가 표시된 것)을 첨부하기 바람.

|  |  |  |  |  |  |
| --- | --- | --- | --- | --- | --- |
| **교 육 참 석 자 명 부** | | | | | |
| 점소명 : (현장명 : ) 20 년 월 일 | | | | | |
| 직 종 | 성 명 | 서명/날인 | 직 종 | 성 명 | 서명/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